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33-01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농촌진흥청

2010 - 2014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2010. 4.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3606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Good Food, Good Life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

2010. 4.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농촌진흥청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식생활 교육의 개관	2
1. 우리나라 식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2
2. 녹색 식생활 개념	6
3. 식생활 교육 실태	7
III. 비전과 전략	15
1. 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전략	15
2. 추진 과제	16
3. 식생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7
IV. 부문별 실천 과제	18
1.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18
2.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26
3. 한국형 식생활 실천	32
4.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39
V. 추진 일정	42
VI. 5년간 소요예산(안) ('10~'14)	43

* 참고 : 식생활 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

I. 추진 배경

-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고유가로 인한 자원위기에 직면, 녹색성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Green Race** 중
 -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 비전화 ('08.광복절 경축사)
 - 실제 생활속의 녹색 생활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식생활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증가**
 - * 생활속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중요성 강조 ('09. 10 대통령 라디오 연설중)
 -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생활 습관병 증가,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증가
 - 곡물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유제품 소비는 확대
 - * 쌀 1인당 연간 소비량 : ('80) 166kg → ('90) 120 → ('00) 94 → ('08) 76
 - * 1인당 연평균 식품공급 증감 추이('90~'07) : 곡류(△1.0%), 육류(3.5), 유제품(3.5)
 -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유병율이 높아지고, 영양불균형 심화
 - * 비만비율(20세이상) : ('98) 26.3% → ('01) 29.6 → ('07) 31.7
 - * 당뇨병 추이 : ('96) 3.1% → ('02) 6.0 → ('04) 6.4 → ('07) 9.5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은 연간 18조원 수준('05), 처리 비용은 약 6천억원 소요
 - 선진국은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범국가적 식생활운동 전개 중
 - * 일본 : 식육기본법을 제정 ('05.7월), 건강일본21프로젝트 추진 중
 - * 프랑스 : 어린이 미각조리개발 프로젝트 추진, 캠페인 전개
-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 ('09. 11월)을 계기로 범국가적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Ⅱ. 식생활 교육의 개관

1

우리나라 식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가. 환경적 측면

- (생산)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편이나, 화학비료, 농약 과다사용 등이 여전히 문제
 - 농림업 면적은 전 국토의 81%(816/997만ha)를 차지하나, 온실가스는 농업분야가 2.5%를 배출, 산림분야는 6.3%를 흡수
 - 반면,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OECD 회원국중 농약사용량 1위, 비료사용량 4위)
 - * 화학비료 사용량 : ('90) 458kg/ha → ('00) 381 → ('04) 385 → ('08) 311
 - * 농약 사용량 : ('90) 10.4kg/ha → ('04) 13.0 → ('08) 13.8
 - 식품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 중 1.9%수준으로 부가가치점유율 5.9%에 비해 낮은 상황
- (유통) 한국의 1인당 수입식품의 푸드마일리지는 5,121 (t·km/인)*로 과다('07년)
 - * 푸드마일리지 : 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식품수송량(t)과 수송거리(km)를 감안
 -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09. 6월)
 - 식품 수입이 많은 국가일수록 푸드마일리지가 높고, 식품유통과정에 CO₂ 발생도 높은 경향
 - * 주요국 1인당 식품수입량 ('07) : 韓 456kg, 英 434, 日 387, 佛 386
 - * 주요국 1인당 수입 푸드마일리지 ('07) : 日5,462t·km/인, 韓5,121, 英2,584, 佛869
 -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
 - * 연간 푸드마일리지 및 CO₂ 배출량 : (수입) 2,480억t·km, 552만톤 (국산) 50억, 124만

□ (소비)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과도한 경제적·환경적 비용 발생

○ 외식 확산,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1년 11.2천톤/일에서 '07년 14.2천톤/일로 연간 3%씩 증가

* 발생원 : 가정 (70.2%), 음식점 (16.1), 집단급식소 (9.4), 시장 등 (4.3)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는 연 18조원*('05년 기준)으로 약 6천억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

* 18조원 : 한국식품개발원은 '01년 15조원으로 산정('05년 가치로 환산시 17.9조원), 세종대학교는 18.6조원('05년 가치)으로 산정

*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은 연간 178만톤(자동차 62만대분)

○ 국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저감 필요성은 공감 (94.3%)하나 실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정책적 시사점 >

- ◇ 생산 측면 : 친환경 식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 ◇ 유통 측면 : 푸드 마일리지 개념을 통한 지역 식품 소비 촉진
- ◇ 소비 측면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국민적 노력 제고

나. 건강·영양적 측면

□ (전통음식 인지도) 국민 대부분 김치, 장류 등 전통음식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는 상황

○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통음식인 한식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1%(조사대상자의 86%가 밥 위주로 식사)

*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09. 12월, 농식품부)

○ 반면,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장류 63.4%, 김치류 40.2%, 떡류 61.6%, 한과류 81%

□ (에너지 공급원 변화) 1인 1일 에너지 공급원 중 쌀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중은 줄고, 육류·유지류의 비중은 증가

- 쌀은 '80년보다 2배('80 : 49.6% → '07 : 28.4) 감소한 반면, 육류는 2배(3.7% → 7.5) 유지류는 3배(4.9% → 15.0) 증가
- 탄수화물은 '80년보다 $\Delta 12\%p$ (72% → 59.8), 지방은 10%p (4.9% → 15.1) 증가

□ (생활습관병 증가) 비만·당뇨병·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이 지속 증가

- 비만(19세 이상 성인) : 10년간 5.7%p 증가('98 : 26% → '07 : 31.7)
* 2~18세 소아·청소년 : ('97) 5.8% → ('05) 10.9
- 당뇨병(30세 이상) : ('98) 11.6% → ('01) 8.6 → ('07) 9.5
- 저HDL 콜레스테롤혈증(30세 이상) : ('98) 22.2% → ('07) 47.6
* 국민건강보험의 비만 등 성인병 치료비 지급액 : ('07) 1조 8천억원

□ (결식율 증가) '07년 아침 결식율은 남자 20.9%, 여자 21.4%로 '05년에 비해 각각 4.5%p, 4.2%p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

- 결식의 이유는 습관 26.9%, 늦잠 24.1%, 시간이 없어서 22.2% 등으로 결식이 습관화된 경우가 전체의 73%로 심각
-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적은 경우 간식섭취가 증가하고, 청소년 선호 간식이 과자류, 빵류, 라면류 등인 점을 고려할 필요
*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99 김숙희)

< 정책적 시사점 >

- ◇ 균형잡힌 영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 : 국민의료비 지출도 절감
- ◇ 아침 결식율 줄이고, 전통 식생활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대책 필요

다. 사회적 측면

□ (가정내 식생활 교육 약화) 독신가구의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가정 내 식생활 지도 기능이 급격히 약화

○ 전체가구 중 독신가구 비중 : ('80) 4.8% → ('05) 19.8 → ('07) 20.1

○ 여성경제활동 인구 확대 : ('80) 42.8% → ('00) 48.8 → ('08) 50.0

○ 가족동반식사율 ('07) : 아침 56.4%, 점심 21.3, 저녁 68.1

□ (외식 비중 증가) 외식비가 가계비 중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년 6.0%에서 '09년 47.5%로 큰 폭 증가

○ '05년 외식빈도는 하루 2회 이상 7.5%, 하루 1회 44%, 주 1회 이상 17%, 월 1회 이상 16.5% 등임

□ (식생활교육율)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설문 조사결과 식생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7%*에 불과

*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09. 12월, 농식품부)

○ 농어촌 현장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

* 일본은 식생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의 비율을 '05년 70%에서 '10년 90% 이상으로 제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

□ (식생활 지침) 개인의 건강 중심의 식생활 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나, 식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국민 식생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

○ 국민이 식생활 지침을 따르는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전무

* 일본은 식사밸런스가이드를 실천하는 국민비율 목표 제시 ('10년 60%이상)

◇ 환경, 국민 건강, 배려와 감사 등 식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올바른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

2

‘녹색 식생활’ 개념

- 최근의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의 개념 정립이 필요
 - * ‘식생활’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조) : 식습관, 식사예절 등 식문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의미
 -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식생활
⇒ 녹색 식생활 실천으로 환경적 부담 완화 (환경)
 - 성인병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식생활
⇒ 올바른 식생활로 경제적 부담 절감 (건강)
 -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하여 배려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식생활
⇒ 식생활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배려)
- 식생활의 3대 핵심가치를 ①환경, ②건강, ③배려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을 재정립

< 녹색 식생활의 정의 (안)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

- (환경) 식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활속에서 녹색 식생활 실천
- (건강) 전통식생활을 바탕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배려) 농어촌 체험, 조리 체험 등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

가. 유치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 중 2개 영역(건강 생활, 사회 생활)에 식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적음

- * 교육과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공통적·일반적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
- * 5개 영역 :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

○ 유치원 교육과정 상의 최소 내용 체계인 ‘수준별 내용’ (총 150개) 중 식생활 교육 관련은 4개로 2.7% 수준

- * 각 영역별 수준별 내용 및 식생활 관련 내용 규모 : 건강(29, 3), 사회(36, 1), 표현(20, 0), 언어(34, 0), 탐구생활(31, 0)

○ 유치원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주제로 교과부가 제시한 ‘범교육과정적 주제’에 식생활 교육은 없음

- 환경, 보건, 안전,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은 포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관련 내용>

영역	내용	하위 내용	수준별 내용	
			I	II
건강 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른 식생활 하기	· 음식물의 필요성을 알고 골고루 먹는다.	·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골고루 먹는다.
			·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 음식을 바른 자세로 즐겁게 먹는다.	
사회 생활	사회현상에 관심가지기	우리나라와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 가지기	·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친밀감을 가진다.

◇ 유치원 교육과정 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한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

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 (교과) 주로 초등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연간 68시간 교육
 - 한 학년 당 전체 교육 시간 중 실과의 식생활 교육 비중은 1.1% 수준
- ◇ (특별·재량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종전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
 - 교과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주제 제시 사항에 ‘식생활 교육’은 누락

교과

- 학교 식생활 교육은 주로 실과 (기술·가정) 과목에서 영양, 조리체험, 전통 식문화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 (초등) 5, 6학년 실과의 교육 시간은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으로, 식생활 교육의 비중이 적고 교육 내용도 조리 체험 위주로 구성
<초등학교 실과(5, 6학년)의 식생활 교육 시간, 2007 개정 교육과정 기준>
 - * 연간 전체 교육시간 중 식생활 교육 비중 : 1.1% (한 학년 1,054시간 중 12)
 - * 식생활 교육 내용 중 조리 체험 비중 : 66.7% (한 학년 12시간 중 8)
- (중등) 기술·가정 과목에 영양, 식사 예절, 조리 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생활 교육 시간의 비중이 적음
- (고등) 2, 3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에서 제외되고, 식생활 관련 선택과목 개설 (식품과 영양, 급식관리, 한국조리 등)
 - * 1학년 가정과학 과목에서 식생활의 변화, 세계의 식생활을 일부 교육

□ 녹색 식생활 교육 내용인 환경, 농업·농촌, 감사와 배려는 전무하거나 극히 일부 학년의 교과에만 일부 포함

○ 환경 (중등 2, 중등 3 기술·가정), 농업·농촌 (중등 3 기술·가정), 감사와 배려 (없음)

□ 그 외 체육(초등 3) 및 바른생활·즐거로운 생활·사회(초등 1, 5) 교과서에 식생활을 주제로 하는 본문 내용 다소 수록

○ 교과서 본문의 주제·내용이 식습관, 전통 식문화, 건강·영양, 식품의 선택, 도·농 교류 등에 관한 내용

<실과 교과 이외 교과서의 식생활 관련 내용>

학교 급별	학년 (학기)	과목	식생활 관련 내용	
			분야	세부 내용
초등 학교	1(1)	바른 생활	식습관	○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 식사에절 (수저 잡는 방법, 바른 자세로 먹기,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기)
		즐거로운 생활	식습관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음식 섭취(알맞게 골고루 먹기)
	3	체육	식습관	○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건강의 관계 ○ 식사에절, 질병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 ○ 식생활 습관과 체중의 관계 ○ 체중 조절을 위한 식생활 실천 방법
			건강·영양	○ 균형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 식품 구성탑
			식품	○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품 선택·보관·이용 방법
	5(1)	사회	전통 식문화	○ 조상들이 계절별로 즐긴 음식의 종류 ○ 김치의 유래와 종류, 지방마다 김치 맛이 다른 이유 ○ 김장하는 이유와 시기
			도·농 교류	○ 농산어촌 체험, 주말 산촌 학교, 어촌 체험 관광 ○ 농산물 직거래

특별 활동 · 재량 활동

- 학교의 재량에 의해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교육하거나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가정통신 자료로 배포
 - (특별 활동) 비만교실부, 식생활문화부, 편식지도부, 조리실습부 등 운영
 - (재량활동) 급식실 체험, 식사예절, 영양, 친환경 등을 직접 또는 방송 교육
 - (가정통신 자료) 식생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가정통신으로 배부, 필요한 경우 종례 시간에 담임교사가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11년부터 적용)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비교 >

교육과정	초등학교(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	2	3	4	5	6		
2007 개정 (재량+특별)	90	102	102	136	136	136	510 (170*3)	170
2009 개정	272		204		204		306	408

- 교육과정의 ‘범교과적 학습 주제*’에 ‘식생활 교육’은 누락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이 추가됨
-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 지도록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학습 주제로서, 환경, 보건,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 37개 학습 주제 포함

- ◇ 교육과정 상의 전 학년에 걸쳐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위한 연구 필요
- ◇ ‘창의적 체험활동’에 녹색 식생활 교육을 강화할 필요

다. 국가·지자체에 의한 식생활 교육

각 부처별로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해 분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 식생활의 개념(건강, 환경, 배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은 없는 상태

업무영역별 교육 실태

- **농산어촌 체험·교육 기회 제공**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행안부)
 -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마을 지정** ('09년까지 지정 현황)
 - * 녹색농촌체험마을(442개소), 농어촌테마공원(22), 어촌체험마을(102), 농촌 전통테마마을(170), 농촌교육농장(176), 산촌생태마을(204), 아름마을(23)
- **전통 식생활·식문화 교육**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전통 식생활·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체험 기회 제공,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 전통 식생활 체험 교육,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전통 식생활·식문화 전문인력 양성),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 (농가맛집)
- **국민 보건·영양 개선 교육**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보건소)
 - 취약계층 대상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
 - * 영양플러스 사업 ('10, 174억원)
 -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침, 영양섭취기준 보급
 - * 국민 식생활지침 수립 ('03, '09),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시 ('05)
 -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가공식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조리판매식품)
- **어린이 대상 식품 안전 교육** (식약청)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 어린이 먹거리 안전 2010 종합대책 수립 ('07. 2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정 ('08. 3. 21.)

라. 민간(단체)에 의한 식생활 교육

-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농어촌 체험, 식재료 선별법 등을 자율적으로 교육
 - (생활협동조합)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도농 교류 활동 및 소비자 대상 식품 안전 교육 등을 실시
 - * 한살림 : 유기농산물 직거래, 산지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환경농업 운동 등
 - * 한국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 안전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 확대, 식품 안전 교육, 산지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등
 - (학교급식관련단체) 학교급식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제정 운동, 식품안전시스템 확보 운동, 교육 및 홍보 활동, 상담실 운영 등
 - * 학교급식네트워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체험, 식재료 선별법, 전통 식문화 교육 등
 - * 농협 : 팜스테이 사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07 현재 339개 마을 지원), '우리 농축산물 바로 알기' 교육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 * 생활개선중앙회 : 농촌현장체험사업, 쌀 간편음식 보급 운동 실시
 - 그 외 환경단체, 학부모 모임, 교사 모임 등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 음식물 쓰레기 안남기기 운동, 먹거리 교육 등 실시
 - 개인이 테마별·주제별 식생활 체험시설을 건립·운영
 - 개인적 목적으로 건립·운영되어 규모가 영세하여 체험·교육·전시·홍보 등 체험관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 *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수뢰미전통음식체험관, 순창장류체험교육관 등
- ◇ 민간단체가 녹색식생활의 3대 요소 (환경, 건강, 배려)를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참고>

해 외 식 생 활 교 육 실 태

① (일본) 식육기본법('05.7월 시행) 및 식육추진기본계획('06.3월 수립)에 의거, 민관 협력 하에 범국민운동으로 식생활 교육 전개

- 식육추진회의(의장 : 내각총리대신)에서 5년 단위로 식육추진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지자체, 식생활 교육 관련 각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운동 전개
- 주요 추진 활동
 - (가정에서) 생활리듬 향상, 어린이 비만예방 추진, 임산부·유아 영양지도 등
 - (학교·보육시설에서) 학교 급식 메뉴 충실화, 농림어업 체험, 식품폐기물 재생에 관한 체험 등
 - (지역에서) '일본형 식생활' 실천, '식생활지침' 및 '식사 밸런스 가이드' 활용 촉진, 보건소·의료기관에서의 식생활 교육
 - (식육추진운동 전개) 식육월간(6월) 및 식육의 날(매월 19일) 지정, 민간 표창,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② (프랑스) 어린이들의 미각 형성 및 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이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 성장기 어린이(유아기~11세)의 미각 기초교육을 위한 「요리 미각예술 5개년 계획(PAC)」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약 9만명 교육
- 1990년부터 「미각주간」(매년 10월 둘째주)을 정하여 미각조리 교실, 요리콩쿠르, 미각 및 식사에 대한 토론회 등 운영
- 농업 체험, 지역요리 체험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교육농장제도' 활성화

□ (미국) 영양교육 외에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 실시

- 영양정책과 영양교육의 기초가 되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발표
 - 제6차 지침('05. 1월)에서는 지방, 식염, 설탕의 과잉섭취에 관한 주의사항 등 비만대책이 더욱 강화됨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실 농업(Agriculture in Classroom) 운동 : 영양교육, 식사에절 및 학교 내 텃밭에서 농사 등 체험 식생활 교육 실시
 - 팀 뉴트리션(Team Nutrition) : 어린이들의 영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식습관 교정, 학교에서의 식생활 환경 정비 등을 실시
 - * 팀 뉴트리션 : 농무부내 설치된 영양교육 지원기관
 - 건강국민 2010(Health People 2010)프로그램(보건부) : 초등~고등학교 대상의 영양교육을 2010년까지 95% 추진 목표

□ (이태리)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미각체험·교육 실시

- 슬로푸드 운동을 통하여 전통 식문화 보존 및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생산자 보호
 - 슬로푸드 프레시디아(지킴이 활동), 슬로푸드 상, 음식문화과학 대학, 페라 마드레 등
 - * 페라 마드레(어머니 땅 지구) : 전세계의 먹거리 생산자·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네트워킹하는 축제
- 미각체험·교육을 위한 ‘맛의 방주’, ‘살론 델 구스토’ 개최
 - * 맛의 방주 :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 하면서 미각 식문화를 공유하는 이벤트
 - * 살론 델 구스토 :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식 장터

◇ 정부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

Ⅲ. 비전과 전략

1

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전략

□ 비전 : 건강한 국민, 녹색 식문화

□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 환경 · 건강 · 배려를 고려한 녹색 식생활 확산

○ 분야별 성과지표

◇ (환경)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확산

- ▶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 : ('09) 4.7% → ('14) 12
- ▶ 푸드마일리지 인지도 : ('09) 13.5% → ('14) 40
- ▶ 음식물 쓰레기 인지도 : ('09) 37% → ('14) 50

◇ (건강)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

- ▶ 녹색 식생활 지침 실천율 : ('09) 10% → ('14) 40
- ▶ 식생활교육조례 제정율 : ('10) 전 시·도 → ('14) 전 시·군·구
- ▶ 아침밥 먹기 실천율 : ('09) 67% → ('14) 80
- ▶ 전통음식 조리법 인지도 : ('09) 53% → ('14) 60

◇ (배려)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 ▶ 식생활 교육·체험 참여율 : ('09) 13.6% → ('14) 40
- ▶ 먹을거리 제공자에게 감사하는 국민 비율 : ('09) 77.5% → ('14) 85

□ 추진 전략

- ① 식생활 교육의 범국민적 붐 조성 · 확산
- ② 민 · 관, 가정 · 학교,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 확립
- ③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방법 발굴 · 활용
- ④ 녹색 식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 기반 마련

부문	추진 과제	세부 실천 과제
①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1-1. 법령 체계 정비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
	1-2. 전문인력 양성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1-3. 녹색 식생활 가이드 마련	•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1-4. 정보 플랫폼 구축	• 녹색 식생활 정보 114 구축 • 물레방아 식생활 모형 개발·보급
	1-5. 추진체계 정립	• 국가, 지역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식생활 교육 조례 제정 • 범국민운동조직 활동 지원
②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2-1. 환경친화형 식생활 교육·식품 안전 교육 강화	•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 활성화 교육 • 농식품 안전 교육 강화 • 자원절약 교육 확대
	2-2.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소비지판매장 지원 • 「녹색매점」 설치 • ‘지역순환형 학교급식시스템’ 구축 •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 ‘식품 탄소표시인증제’ 도입 • 건강·검소·고품격 한식세계화 추진
③ 한국형 식생활 실천	3-1.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천 유도	• 가정식생활수첩 배포 • 가족 밥상의 날 지정 •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원별 교육 기회 제공
	3-2. 유치원·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강화	• 식생활 교육 교재 제작·보급 • 식생활 연구학교, 방과후교실 지정·운영 • 교대 대상 녹색식생활교육사업 실시 • 녹색 식생활 지침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3-3.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 등) • 맞춤형 전통식생활 교육 실시 •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 • 한식 우수성 DB 구축, 홍보
④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4-1. 농어촌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 배양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농어촌 체험 교육 활성화 • 농어촌 체험 여행상품 개발
	4-2. 식생활 체험 기회 확대	• 학생·학부모 및 전 국민 체험 활성화 • 식생활 증진 학술행사, 페스티벌 개최·지원 • 도시농업(시민텃밭, 옥상정원 등) 확산 • 1가족·1校·1社·1체험농장 갖기 운동 전개

3

식생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 그간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농어업, 식품, 교육, 학계 등 전 분야가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립을 위해 나설 필요
- 기존 영양적 균형 중심의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까지 고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문화’ 교육을 지향



IV. 부문별 실천 과제

1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1-1 법령 체계 정비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09.11.28)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복지부),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급식법(교과부) 등 다수 법령이 존재
 - ※ 영양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복지부)이 '10. 9월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 통과, '10. 2. 26.)

< 식생활 교육 관련 법령 현황 >

법률명 (제정일)	제정 목적	식생활 교육 관련 주요 내용
식생활 교육 지원법 ('09. 5. 27.)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
국민 건강 증진법 ('95. 1. 5.)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 생활 실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 국가·지자체의 영양 지도 실시 ○ 국민영양조사 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08. 3. 21.)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공급 교육 및 홍보 ○ 학교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학교급식법 ('81. 1. 29.)	합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	○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식생활 지도

1-2**식생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농식품부)**
 - '10년 시·도별 1개 교육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 ※ 지정기준 : ①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수행 역량, ②교육인력 전문성,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 ※ 지정대상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식생활관련 기관·단체 중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기관 (교원 연수기관 포함)
 - '10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20년까지 1 시·군 1 교육기관 지정 추진 (지자체 협조)
 - * 지정 계획 : ('10) 1시·도 1개 → ('14) 100개 → ('20) 전체 시·군·구
-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을 활용,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 (농식품부)**
 - (대상)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조리사, 선도 농어가 등을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식생활 교육 강사 풀 DB구축)
 - (내용) 녹색 식생활의 개념, 식품 안전성, 농어업의 이해, 전통 식문화, 영양, 식생활과 환경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이론과 실습을 병행
 - ※ 장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검토
 - (연계)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생활체육 교육, 보건소의 보건·영양교육 등과 연계 방안 마련 (복지부 협조)
 - 농식품부의 녹색식생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병행 교육 추진
 - ※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직무연수제도 도입 (교과부 협조)
-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강사풀 제공, 교육 시설·장비, 홍보 경비 등 지원 (정부, 지자체)**

- 매 3년마다 국민의 식생활 전반에 대한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복지부 협조)
 -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건강·영양 조사」에 환경·식생활체험·전통 식문화 내용을 추가하여 식생활 실태조사 병행 실시
 - 「국민 건강·영양 조사」는 영양 중심의 조사이며, 식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미
 - * 식생활 실태조사 내용 (예시) : 식품 구입시 고려 요인, 식생활 교육 경험, 농어촌 체험 교육, 식품 인증제도 인지 등
 - 양 부처 합동으로 비용 부담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 검토
 - * 식생활 실태조사는 '11년, '14년 실시 계획
 - 조사결과는 식생활 종합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개하여 식생활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 식생활 지침」 보급 (농식품부)
 - 건강·영양 중심인 복지부의 식생활 지침에 녹색 식생활의 3대 분야 (환경, 건강, 배려)의 내용을 균형되게 반영한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영양 분야의 경우, 복지부의 식생활 지침 중 핵심적인 내용을 녹색 식생활 지침에도 반영하여 부처간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복지부 협조)
 - 개발된 식생활 지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만화, 브로셔, 팸플릿, CD, 동영상 등의 형태로 보급
 - 개발된 「녹색 식생활 지침」을 지속 연구·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차원의 (가칭) '식생활 지침 연구 포럼'을 구성, 운영을 지원
 - * 푸드마일리지, 에너지절감형 저탄소 조리법, 녹색식생활에 대한 건강학적 우수성 등에 대한 연구 지원

1-4

식생활 정보 플랫폼 구축

- 국내외 식생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 「녹색 식생활 정보 114」 (포털사이트) 구축 (농식품부)
 - 식생활 지침, 기본계획 추진상황, 지자체 및 공공기관 추진실적, 식생활 교육·체험, 식품안전·영양 등 식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 식품 생산자 및 소비자 간 양방향 정보 소통의 채널로도 활용 도모
 - * 건강·영양 정보는 식품안전·영양 정보사이트(복지부, 식약청)와 연계하여 제공
 - 포털 사이트 외에도 국민의 관심 유발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책자, 교재,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보급·계재
 - 식생활 관련 부처의 사이트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생활 정보의 내용 통일 추진 (농식품부, 복지부·식약청 협조)
- 국민의 식생활 활동이 친환경, 식생활 체험활동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가칭)녹색 물레방아」 식생활 모형 개발·보급 (농식품부, 복지부·식약청 협조)
 - 국민이 하루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입력할 경우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녹색 식생활을 어느 정도 실천하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형 개발
 - 개발된 모형은 식생활 포털사이트 게시, 정부·학교·지자체·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링크
 -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하여 이용을 제고 (식약청)
 - ‘오늘의 녹색 물레방아’ 등 우수 사례 선정 이벤트 실시하여 국민 스스로 참여 유도



<녹색 물레방아 모형 (안)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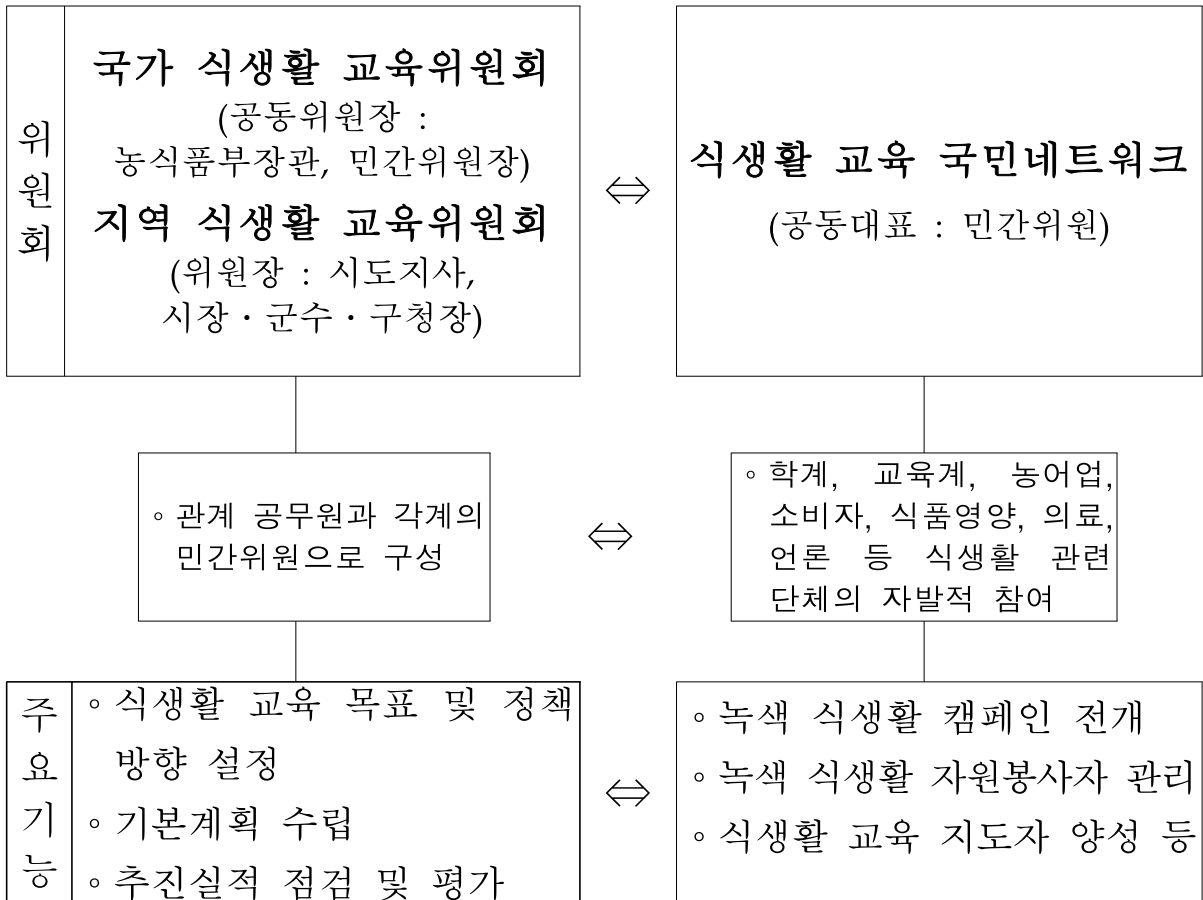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정립

- ◇ 식생활교육지원법('09.11.28) 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설치
 - 기능 : 식생활 교육목표·정책방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 민간이 주도하는 올바른 식생활 정립을 위해 **자발적인 범국민운동을 전폭 지원**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도

< 정부 조직 >

< 민간 조직 >



국가 추진체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 구성 : 관련부처 장관, 유관기관·단체장, 농어업·영양·보건·의료 등의 전문가를 포함, 민·관 합동으로 20명 이내
 - 정부(9)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 기관·단체(4) :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민간(7) : 농어업, 교육, 영양, 의료, 식품, 소비자 등 관련 단체 대표
 - * 범국민적 식생활 운동 확산을 위하여 향후 민간위원 확대 추진 검토
 - 기능 : 기본계획 심의 의결, 식생활 정책 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부처별 중점 추진 분야
 - (농식품부) 식생활 교육 총괄, 기반 구축, 국민운동 조직 지원, 홍보, 환경친화적 농식품 소비 촉진, 지역 농수산물 사용 활성화
 - (기재부) 식생활 교육 소요 예산 지원
 - (교과부) 학교 교육과정 상의 식생활 교육 강화
 - (행안부) 지역 추진체계 정립(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예산 등) 지원
 - (문체부) 전통 식문화 확산 추진
 - (복지부) 국민의 영양 관리 및 영양 개선 교육, 관련 정보 제공
 -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총괄
 - (여성부)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운동 확산 추진
 - (농진청) 전통 식생활·식문화 계승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식약청) 영양표시 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지자체 추진체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 시·도 위원회 : 시·도 교육감, 농업기술원장, 농협지역본부장, 언론, 영양·보건·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식생활 전문가 등
 - 시·군·구 위원회 : 시·군·구 교육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농협 지부장, 언론, 영양·보건·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식생활 전문가 등
- 기능 : 시·도/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
- '10년까지 모든 시·도, '1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구성 완료 목표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시·도는 국가 기본계획이 시달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는 시·도 기본계획이 시달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계획 추진성과를 수시 점검

□ 식생활 교육 예산,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조례」 제정 권장

* ('11년) 모든 시·도, ('14년) 모든 시·군·구 조례 제정 목표

민간 추진체계

- 민간 주도의 녹색식생활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민간연합 단체의 발족을 권장하고 정부는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
 - (참여단체 확대) 농어업, 식품영양, 보건의료, 교육, 소비자, 언론, 학계 등 200여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발족('09.12월)
 - (자율운영)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 초기 신속한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지원
 - ※ 연회비 등 자체 재원 확보 수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부사업지원 확대 또는 조세감면과 연계, 기부금 조성 활성화 추진 검토
 - (범국민운동) 국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
 - 건전한 식생활 습관화를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식생활운동 전개
 - 녹색 식생활 운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
 - * 자원봉사 풀 구성 : 대학 식품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선도 농어업인 등
- 식생활 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구성 장려 (농식품부, 지자체)
 - 지자체내 관·학·민간 단체·식품관련 기업 등 식생활 관련 계층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구성
 - 순회 체험·교육,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텃밭 가꾸기 등 특정 활동 목표
 - * 정부는 협의체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비용 지원
 - 정부는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성도 장려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도 및 자발적 참여도 제고

2-1

환경친화형 식생활 교육 · 식품 안전 교육 강화

□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 활성화 교육 (농식품부)

- 농식품의 이동거리에 따른 탄소배출량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화하여 활용
 - * 개인별 푸드마일리지 계산하기 운동, 푸드마일리지 올리기 등 재미와 오락을 가미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기농업 ·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법 등 환경친화적 식품 교육 강화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친환경적인 인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확산

□ 국민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해 농식품 안전 교육 강화 (농식품부)

- BSE, 유전자변형(GM) 작물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
 - 교육교재 보급, 체험 · 학습 프로그램 실시 등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절약에 관한 교육 확대

-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 (교과부, 환경부)
 - 학교별 매주 1회 이상 ‘잔반통 없는 날’ 운영, 우수학급 포상
 - 초중고교의 재량활동·특별활동시간, 조·종례시간 등을 활용
- 교육 콘텐츠 및 교육교재·홍보물 개발 (관계부처 공동)
 - 어릴 때부터 음식을 아끼는 습관 체득 유도
- 대국민 홍보 강화 (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문화부)
 - 핵심 콘텐츠 개발, TV드라마내 식생활장면 강조 등 홍보

가 친환경 농식품 생산·공급 확대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확대 (농식품부)

○ '06년부터 1,000ha규모의 시·군 단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0년 5개소(누계 25), 개소당 10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 '95년부터 10ha규모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10년 12개소(누계 1,003), 개소당 2~1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및 소비지 판매장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 가락시장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운영('09. 2월 개장) 및 강서시장 내 친환경급식유통센터 설치('서울친환경유통센터', '10. 3월 개장)

* 건축면적 : 2,000m², 소요비용 90억원(서울시), 처리물량 : 연간 9만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소비지 판매장 관련 매장보증금 등 지원

* 농안기금 : ('09) 10개소 24억원 → ('10) 10, 24

□ 학교내 지역 친환경 과실류를 판매하는 「녹색 매점」 설치 권장 (지자체)

○ 매점 설치시 지역 농협 등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지원 추진 (농식품부)

— < '건강 매점' (서울시 사례) > —

◇ 청소년들의 아침걸식을 방지하고 몸에 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매점에서 제철 과일 및 과일제품 등을 판매

- (예산) 서울시가 지원, (과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공급

* ('09) 10개교 시범 설치 → ('11) 100 → ('12) 서울시내 전 학교 설치 목표

나 지역 농수산물 사용 활성화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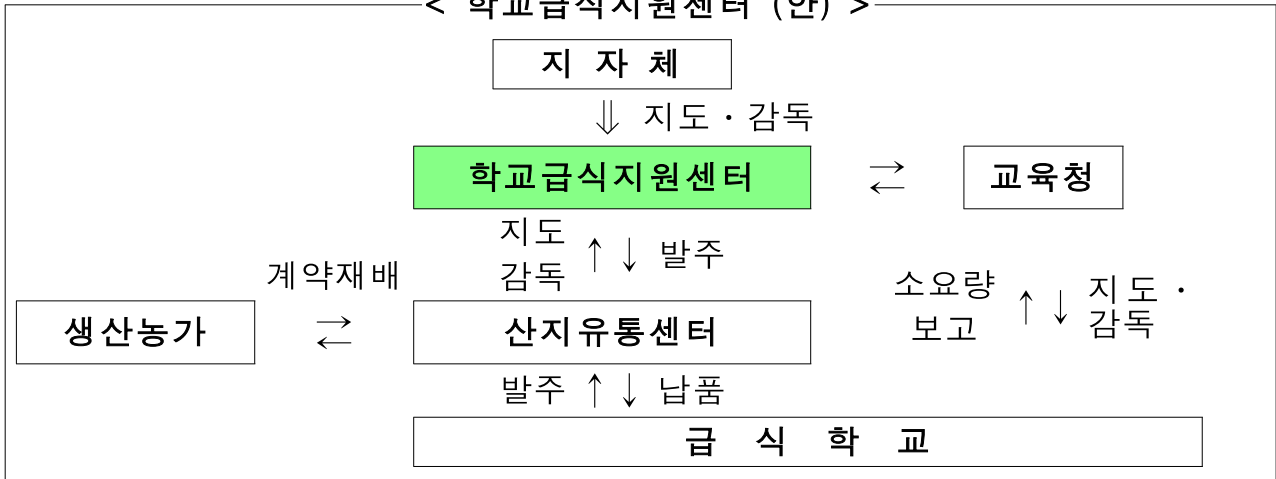
< 지역 농수산물의 의미 >

(협의)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광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의미함

□ 생산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형 학교급식시스템’ 구축·운영 (지자체)

- 지자체 내 거점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갖추고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지자체, 지역농민,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교·학교급식위원회, 생활협동조합, 지역내 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성격

< 학교급식지원센터 (안) >



-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센터(RPC, APC, LPC 등)와 연계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소비 유도

- * 안성, 나주, 순천 등 유사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벤치마킹 추진
 - (안성) 안성마춤농협을 거점 공급처로 하고, GAP 등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생산단지를 지정하여 계약 납품
 - (나주·순천) 전자 수발주 (EDI) 시스템 구축,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지정된 선별·포장 시설(APC)을 통해 학교 공급

- 지자체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
 -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생산 등을 통해 유통마진 절감

<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사례 >

- ◇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강서도매시장 내, '10. 3월)
 - * 우수농축산물 지원 확대 : ('09) 10억원 → ('10) 98억원
- ◇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급식지원센터 설치 ('12 완공)
- ◇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를 100%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60% 보조, ('09) 595억원
- ◇ (전북)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공급
 - * 정부양곡과 친환경쌀의 차액 보조(20kg당 26,620원), ('09) 72억원

□ 저탄소형 식품소비 실천을 위한 민·관 기초인프라 강화

- 탄소배출 최소화 식품소비 실천을 위해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민간단체)
 - 실생활에서 푸드마일리지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산출식 작성 및 사이트 구축 등을 지원

< 일본의 푸드마일리지 활용 사례 >

- ◇ 일본의 NGO 단체인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푸드마일리지 캠페인' 홈페이지 (www.food-mileage.com) 운영
 - 매장, 단체의 푸드마일리지 표시를 지원
 - 산지, 수송수단을 입력하면 포코(poco)를 자동으로 계산
 - * 이산화탄소 배출량(poco) : 이산화탄소 배출량(g) / 100

- 제조·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마일리지 표기(제품, 영수증 등) 유도

< 제품 표시 사례 >

가까운 먹을거리

쌀 8kg

아산 — 100km (CO₂ 138g)
 미국 — 1,234km (CO₂ 710g)

가까운 먹을거리를 선택하면
 67시간 끄는 효과
 CO₂ 572g 줄어요!

순두부 300g

아산 — 100km (CO₂ 2g)
 미국 — 19,736km (CO₂ 140g)

가까운 먹을거리를 선택하면
 16시간 끄는 효과
 CO₂ 138g 줄어요!

< 영수증 표시 사례 >

평균 물품이름(기준)	단위	공급액	평균 물품이름(계별)	단위	공급액	
10 3009 중자곰장어100	100	1,000				
-----<< 샐러드 >>-----						
1 2170 연미/당(4kg)	14,700	14,700				
1 1707 보리(국산/1kg)	2,600	2,600	1 1139 쌀반두(500g)	4,400	4,400	
1 1988 기장/당(500g)	7,400	7,400	-----<< 별적 >>-----			
2 1989 수수/당(500g)	5,100	10,200	1 3007 완살김소서치	0	0	
1 2136 알보리쌀(국산/1kg)	2,000	2,000				
1 2095 귀논미혼/당(500g)	5,000	5,000				
2 185 옥거무(100g)	3,800	7,600				
1 4000 천황/당(500g)	4,700	4,700				
1 4052 참호마스크(생안물)	3,000	3,000				
2 4106 빈종과채(120g)	1,900	3,800				
-----<< 냉장 >>-----						
Y 1 287 김자수제비(500g)	2,700	2,700				
1 896 두부(300g)	2,700	2,700				
수정된 품목이 있으면 함께가격 대차계산해 주십시오					합계:	72,600
-----<< 가까운 먹을거리로 생산자 저구분 이익을 지켜주세요! (Y 표기된 품목의 대상금액입니다) >>-----						
* 동일 업체: 19,877(원) / 총액 69,723(원) / Y 표기분: 48,846(원) / 동일 업체: 19,877(원) / 총액 69,723(원) / Y 표기분: 48,846(원)						

○ 식품의 생산, 소비 등 전 주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표준치를 마련하여 ‘식품 탄소표시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통계 마련 (농식품부)

- (1단계) 공장입구(재료)부터 시장입구(제품)까지 각 부문별, 가공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10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군 4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용역 실시

* '13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37품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2단계) 가공식품 제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1단계)와 원료 생산 및 식품의 소비·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연계

□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우수 소비사례 전파 (지자체)

○ 1교1촌 자매결연을 통해 체험을 동반한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

- 도·농 교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식재료 생산자 표시(실명제) 유도

○ 지자체별 지속가능한 지역 농수산물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 유도

-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 도모를 위한 지원계획, 인증제, 생산·가공·유통·소비 지원 사업 추진

* 원주시 사례 : 최근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9. 12. 21)

< 조례 주요 내용 >

- ◇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 매년 수립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 기본방향 등)
- ◇ 원주푸드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 : 부시장, 위원 25명 이내)
- ◇ 원주푸드 인증 및 인증지원센터 지정
- ◇ 원주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육성·지원 사항
- ◇ 정보시스템 구축, 원주푸드의 날 지정 등

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음식문화 정착

-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사례 확산 (부처 공동)
 - 계획적 식료품구매, 냉장고 정리, 껍질째 섭취 가능한 과일·야채 껍질 소비촉진 등
 -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행안부), 그린리더 등 활용
 - *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 녹색실천을 전파하는 지역단위 주부 모니터요원
 - * 그린리더 : 녹색생활문화 전파를 위한 지역단위 활동가 그룹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및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생활 패턴 개선 추진
 - 「음식문화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복지부)
 - 음식점에서의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 확산, 음식점 대상 소형·복합찬기 표준모델 보급 등
 - 축산물의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 및 등급기준 개선 (농식품부)
 - (돼지고기) 부위별 균형적인 소비를 통해 수입 감소 및 푸드마일리지 축소
 - (한우) 등급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질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절감
- 건강·검소·고품격 한식세계화 추진 (농식품부)
 - 반찬수 최소화 및 약식동원 원리에 기초한 최적화한 메뉴·식단을 개발하여 대표 한식당부터 단계적으로 보급
 - 적용업소에 컨설팅 자금 등 우선지원, 고급화된 식기·메뉴판·디자인 등 보급
-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농식품부, 민간 기업)
 - 주부 대상 아침밥 먹기 강좌 운영 (농식품부)
 - 기업이 참여하는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 추진 ('10. 2월~)

3-1

가정에서의 실천 유도

- 가정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식생활수첩」 500만부 제작·보급 (농식품부, 환경부·교육청·지자체 협조)
 - 녹색식생활지침, 녹색 물레방아 모형 등 녹색 식생활 교육에 대한 설명집을 수첩 내용에 포함
 -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영유아, 학생 등이 있는 가정에 우선 배포
 - * 수첩 배포 목표(500만부) : '10~'14 매년 100만부 배포
 - '가정 식생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수첩 사용 장려 (농식품부, 지자체)
 - * 수첩에 의한 식생활 교육 실천 세대율 확대 : ('10) 보급 → ('12) 10% → ('14) 20
- 매월 「가족 밥상의 날」을 지정하여 함께 조리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생활 교육 실천 장려 (농식품부, 복지부 협조)
 - 1, 3주 일요일을 가족 밥상의 날로 지정, 1끼 이상을 온 가족이 함께 직접 조리하고 식사하며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천
 - 교육 내용 : 식생활과 환경, 영양, 미각, 식사예절, 농어업인에 대한 감사 등
 - * 「녹색 식생활 정보 114」에서 부모를 위한 세부 교육 콘텐츠 풀(pool) 제공
 - * 가족 밥상의 날 실천 세대율 확대 : ('10) 보급 → ('12) 10% → ('14) 20
 - 대국민 홍보 및 조기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제작·방영 지원하여 실천을 제고('10~'12)
 - * 영상물 제작 지원 : ('10) 800백만원 → ('11) 400 → ('12) 300

□ 「식생활 교육의 달」(매년 4월)을 지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산 (농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

- 식생활 교육 관련 행사·축제·이벤트 등을 식생활 교육의 달에 집중 실시하도록 유도
 - 전국 식생활 교육 추진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포지엄, 지자체별 추진대회, 식생활 연계 지역 축제, 자원봉사자 대상 정부 포상 등
- 지자체, 민간 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주축이 되어 거리 캠페인, 체험기회 제공 등 실시
 - 정부는 캠페인 효과 제고를 위하여 표어, 마스코트 제작·보급 및 활동 지원

□ 가정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을 위해 생애 주기별, 가족 구성원별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농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

- (교육주체) 지정 교육기관, 우수 체험공간, 지자체, 민간 단체 등
 - (지원사항)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보급, 강사 풀 제공, 우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시설 지원, 홍보 등 실시
- (교육대상)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임산부 등), 가족 구성원별(父子, 父女, 母子, 母女 등)
 - * 식생활 교육 참여율 증가 목표 : ('09) 13.6% → ('10) 15 → ('12) 20 → ('14) 25
- (교육내용) 식습관, 식문화, 조리체험, 농업·농촌 체험,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 등 녹색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

3-2

유치원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강화

□ 현 교육 제도권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내 식생활 교육 확산 및 조기 정착 도모

* 교육과정 개정, 교사 양성 등 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집중 실시 과제

□ 녹색 식생활 지침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 (농식품부) · 보급 (교육청 협조)

○ 수업 부교재, 재량 · 특별활동, 연구학교, 방과후 교실, 교사 직무연수 등 대상별 맞춤형 교재 및 지침서 개발

* ('11) 대상별 교재 개발 완료, ('10~'12) 전국 초·중·고교 보급 완료 목표

□ 식생활 교육 연구학교 지정 (농식품부, 교육청)

○ 식생활 교육 과정 · 방법 및 교과용 도서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 식생활 교육 연구학교 ('11~'14) : 매년 시·도당 5개 연구학교 지원

□ 방과후 교실에 「녹색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 (농식품부, 교육청)

○ 학생 및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교실 운영하여 학부모 참여 유도
- 전문강사 풀 · 교재 제공 및 운영 지원 (농식품부)

□ 재량·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에 녹색 식생활 교육 강화
(농식품부, 복지부·교육청 협조)

○ 재량·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육 교재·교육 콘텐츠·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 교사, 영양(교)사, 지역 인재 등 식생활 교육 강사 풀 최대한 활용

□ 교사 직무연수 제도에 식생활 교육 과정 도입 권장 (농식품부,
교육청 협조)

* 교육 커리큘럼 제공, 체험공간 연결 등 지원 (농식품부)

□ 학교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속에서 녹색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농식품부, 교육청 협조)

○ 급식 식단과 연계하여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 음식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 등 교육

* 교육용 동영상, 급식시간용 교내 방송물, 교사용 교재 등 보급 (농식품부)

□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 구성 권장 (농식품부, 교육청 협조)

* 연구 모임의 녹색 식생활 체험활동 지원 (농식품부)

중장기 추진 과제

- 전국 교육대학교 대상 「녹색 식생활 교육 사업」 실시 (농식품부)
 -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위한 관련 강좌, 체험 및 연구 동아리 운영 등 지원
 -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함께하는 녹색 식생활 체험, 식생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영양(교)사와의 협력 방안 연구 등
 - * ('11) 2개교 시범 운영 → ('12~'14) 매년 3개교 지원 (학교당 연 1억원 지원)
- 녹색 식생활 지침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농식품부, 교과부·복지부·환경부 협조)
 - '창의적 체험활동'에 녹색 식생활 교육 강화 추진
 - 교육용 교재 보급, 우수 체험공간과 체험활동 연결 등
 - 교육과정 '범교과적 학습 주제'에 「녹색식생활 교육」 추가 검토
 - 전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육단계를 고려하여 각 교과목에 적절한 교육내용 수록 유도
 - 교과서 본문, 사례 등을 통한 간접 교육 기회 확대
 - * 예시 : 푸드마일리지 계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본문, 환경·건강·배려를 골고루 교육 등
 - 교과서 집필진에게 녹색 식생활 교육 관련자료 배포, 사례 수록 협조 요청
 - *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 본문, 사례 연구 개발 ('10, 농식품부)

3-3**지역에서의 전통 식문화 계승 · 발전**

◇ 국민이 접하여 실생활에 옮기고,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에 기반하여 전통 식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제를 중점 추진

□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 · 다양성 홍보를 위한 소비자 대상 교육 실시 (농식품부)**

○ 장류, 떡 · 한과, 김치, 전통주 등의 이해도 제고 및 체험과정 운영

□ **지역농업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을 발굴 · 상품화하기 위해 지역별 농가맛집 육성 (농진청)**

○ 향토음식의 발굴,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장 컨설팅, 농촌형 외식기반 지원 등

* ('07~'09) 35개소 → ('10) 15 → ('14) 130

□ **전통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광역 단위 맞춤형 전통 식생활 교육 추진 (농진청)**

○ 전통 식생활 확산을 위한 **한국전통음식학교** 지원 : ('10) 10개소
- 농가, 차세대, 소비자, 급식교사 등 대상별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및 실천 지원**

- 전국 학교급식 담당 및 교사 대상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의거 농촌진흥청 ·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추진 ('11년까지 매년 200명 교육)

○ **지역농산물 및 향토음식 연계 학교급식 모델 개발**

-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급식모델 개발 : 3유형(도시, 농촌, 도농지역)

* ('10) 모델 개발, ('11) 경기도내 학교 대상 시범사업 계획

□ 지역별 향토음식의 발굴 및 계승, 실천 활동을 주도할 **향토음식 연구회 활성화** (농진청)

- 향토음식 발굴·재현, 제조기술 전수·보급, 명품화 관련 활동

* 지역단위 향토음식연구회 조직현황('08) : 142개회 5,370명

- 지역별 향토음식 지킴이, 1農1食·1品1鄉 실천 및 홍보 주체로 육성

* 1농1식(농가의 대표 향토음식), 1품1향(우리음식연구회의 대표 향토음식 명품화)

□ **전통 한식의 우수성에 관한 DB구축** (농식품부)

- 한식 및 식품에 관한 기존 국내외 논문, 임상·비임상 시험결과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별·품목별 DB구축

- (우선순위) 수출 상위품목 및 세계화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우수성에 대하여 DB 우선 구축

* 수출 상위품목 : 김치, 인삼, 고추 등

* 세계화 가능성 품목 : 장류(간장·된장·고추장), 막걸리, 비빔밥, 삼계탕, 천일염 등

- (대상문헌) 국내·외 주요 연구 성과 및 문헌

□ **한식의 우수성 홍보** (농식품부)

- 한식 및 농식품의 우수성 DB 구축 및 「한식세계화 포털사이트」 ('10 상반기 개설 예정)와 연계

- 한식 및 농식품 우수성 홍보물 제작 배부

- 각종 신문, 음식전문지 게재 등 홍보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 홍보

- 식품업체에 자료 제공 및 박람회·판촉전 등을 통해 홍보

- 전통한식 우수성의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국내외 유명한 식품영양학 및 의학 관련 학술지 게재, 세미나 발표, 포스터 게재

4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4-1

농어촌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 배양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농어업인, 농식품 생산자 및 음식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배양할 수 있도록 권장

□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 하기 위해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농식품부)

○ 지정 기준

- ①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 ②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 ③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 우수 체험공간 지정 목표 : ('10) 150개 → ('12) 300 → ('14) 500

○ 기존 조성되어 있는 농산어촌 체험 시설과 연계

* 농어촌체험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 관광단지, 농촌체험관광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낙농 체험관광목장, 교육농장, 산림체험시설 등

○ 정부는 지정된 체험공간에 대하여 농산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경비 지원

* 지원 규모 : ('10) 200백만원 → ('12) 200 → ('14) 200

○ 양성된 식생활 교육 인력이 체험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 리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역량강화 교육' 과정에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내용 포함 ('10, 3천명 교육 예정)

□ 초·중·고등학생의 농어촌 체험 교육 활성화 (농식품부, 농진청, 교과부 협조)

○ 도시학교와 농촌 체험마을간 결연을 맺어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된 농촌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팜스쿨 추진

- 체험마을 방문, 교내 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학습, 친환경 급식 교육

* ('10) 시범사업 20개소 운영 → ('14) 100

○ 초·중·고교의 농촌체험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운영

* ('06~'09) 176개소 → ('10) 240 → ('15) 1,000 목표

○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촌마을에 체험학교를 개설하여 어업체험 활동과 수산물 요리 및 시식 등의 식생활 체험교육 제공

* ('10) 50개 마을에서 2,000명 교육 예정

□ 농어촌 체험공간과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농식품부)

○ 지역의 체험공간과 향토음식·특산물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웰촌포탈(체험마을 정보사이트)을 통해 홍보·판매

- 향토음식과 지역의 관광자원 및 고유 이야기와 연계('10, 100개 개발 예정)

* (사례) 강원도 화천의 파로호생태마을의 산천어 체험

4-2

식생활 체험 기회 확대

□ 학생·학부모 및 전 국민의 식생활 체험 활성화 (농식품부, 교육청 협조)

○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및 올바른 식생활 체험·교육을 위한 ‘전통식품 체험학교’ 운영

- '10년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추진

* ('10) 초등 (22개교 3,000명), 중등 (5개교 700명) 지원 계획

○ 식생활 증진 및 식생활 교육 확산 관련 학술행사·페스티벌 등 지원 (농식품부, 복지부·교육청·지자체 협조)

- 학생·학부모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방법에 대한 실천 교육·홍보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목적

- 올바른 식생활, 한국형 식생활의 우수성, 전통 식생활 체험과 관련한 연구 결과 전시회 및 이벤트 등 실시

- 「식생활 교육의 달」(4월, 잠정) 행사와 연계 추진

* ('10) 서울시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 시민텃밭, 옥상·베란다 정원 등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농식품부, 민간단체 주도)

□ 범국민운동 차원의 1가족·1교(校)·1사(社)-1교육(체험)농장 갖기 운동 전개 (민간단체 주도)

V. 추진일정

부문	추진 과제	세부 실천 과제	'10	'11	'12	'13	'14
①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법령 체계 정비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					
	전문인력 양성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녹색 식생활 가이드 마련	•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정보 플랫폼 구축	• 녹색 식생활 정보 114 구축 • 물레방아 식생활 모형 개발·보급					
	추진체계 정립	• 국가, 지역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식생활 교육 조례 제정 • 범국민운동조직 활동 지원					
② 환경친화 식생활 기반 구축	환경친화형 식생활 교육 강화	•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 활성화 교육 • 자원절약 교육 확대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등 지원 • 「녹색매점」 설치 • '지역순환형 학교급식시스템' 구축 •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 '식품 탄소표시인증제' 도입 • 건강·검소·고품격 한식세계화 추진					
③ 한국형 식생활 실천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천 유도	• 가정식생활수첩 배포 • 가족 밥상의 날 지정 •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 생애주기별 등 교육 기회 제공					
	유치원·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강화	• 식생활 교육 교재 제작·보급 • 식생활 연구학교, 방과후 교실 지정·운영 • 교대 녹색식생활교육사업 실시 • 녹색 식생활 지침 반영 교육과정 개정					
	지역에서의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 등) • 맞춤형 전통식생활 교육 실시 •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 • 한식 우수성 DB 구축, 홍보					
④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농어촌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 배양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농어촌 체험 교육 활성화 • 농어촌 체험 여행상품 개발					
	식생활 체험 기회 확대	• 전 국민 체험 활성화 • 학술행사, 페스티벌 개최·지원 • 도시농업 확산 • 1 교육(체험)농장 갖기 운동 전개					

VI. 5년간 소요예산(안) ('10~'14)

(단위 : 백만원)

부문	추진 과제	계	'10	'11	'12	'13	'14
합 계		58,533	8,383	12,250	12,450	12,900	12,550
①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체험 공간 등 지원	3,200	400	700	700	700	700
	식생활 조사 연구 (심포지엄,정보플랫폼 등)	2,720	320	600	600	600	600
	국민운동 활동 지원	1,200	200	250	250	250	250
	소 계	7,120	920	1,550	1,550	1,550	1,550
② 환경 친화적 식생활 확산	환경 친화형 식생활 교육	2,500	500	500	500	500	500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9,200	1,200	2,000	2,000	2,000	2,000
	소 계	11,700	1,700	2,500	2,500	2,500	2,500
③ 한국형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 교재 등 개발·보급	3,650	900	600	600	950	600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15,000	1,400	3,400	3,400	3,400	3,400
	소 계	18,650	2,300	4,000	4,000	4,350	4,000
④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식생활교육 체험 지원 (시범학교,재량,체험등)	14,513	2,513	3,000	3,000	3,000	3,000
	식생활(식품, 영양 등) 교육	1,750	150	200	400	500	500
	식생활 실천 국민운동 (다큐,브로셔,사생전 등)	4,800	800	1,000	1,000	1,000	1,000
	소 계	21,063	3,463	4,200	4,400	4,500	4,500

* 이 예산안은 관련 부처 전체 예산의 추정치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 변경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p> <p>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p> <p>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p> <p>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p> <p>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p> <p>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p> <p>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p>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p> <p>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p>	<p>「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p>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p>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농촌진흥청장.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연구소·국제기구에서 학교장·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p> <p>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사람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농림수산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명한다.</p> <p>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p> <p>제21조 (식생활 조사·연구)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p>	<p>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p> <p>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우편조사 및 통계·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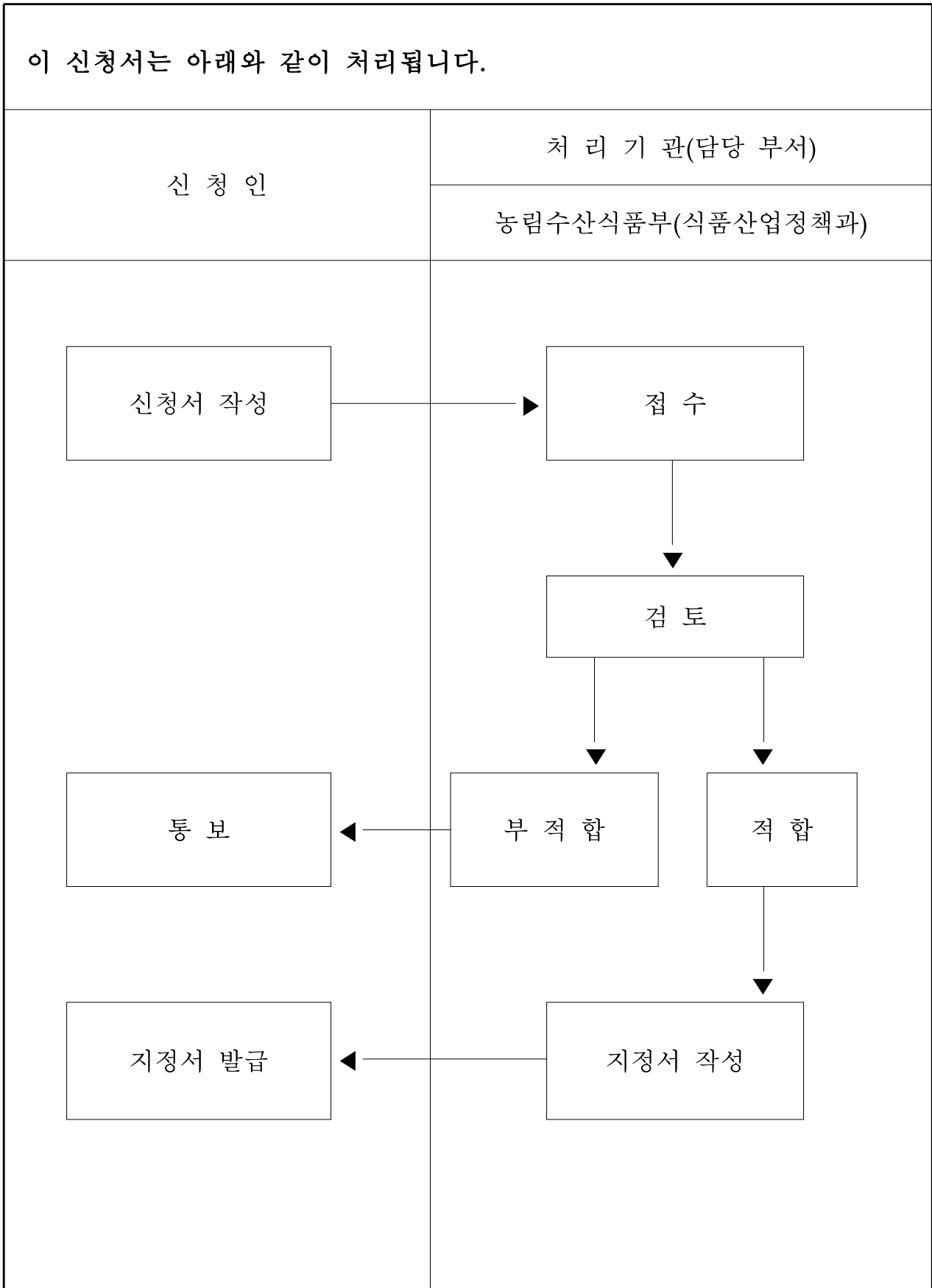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으로 정한다.</p> <p>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사항</p> <p>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p>	<p>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청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p>	<p>제15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서 반납)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급받은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또는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p>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지원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p>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 <제9719호,2009.5.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846호,2009.11.26></p> <p>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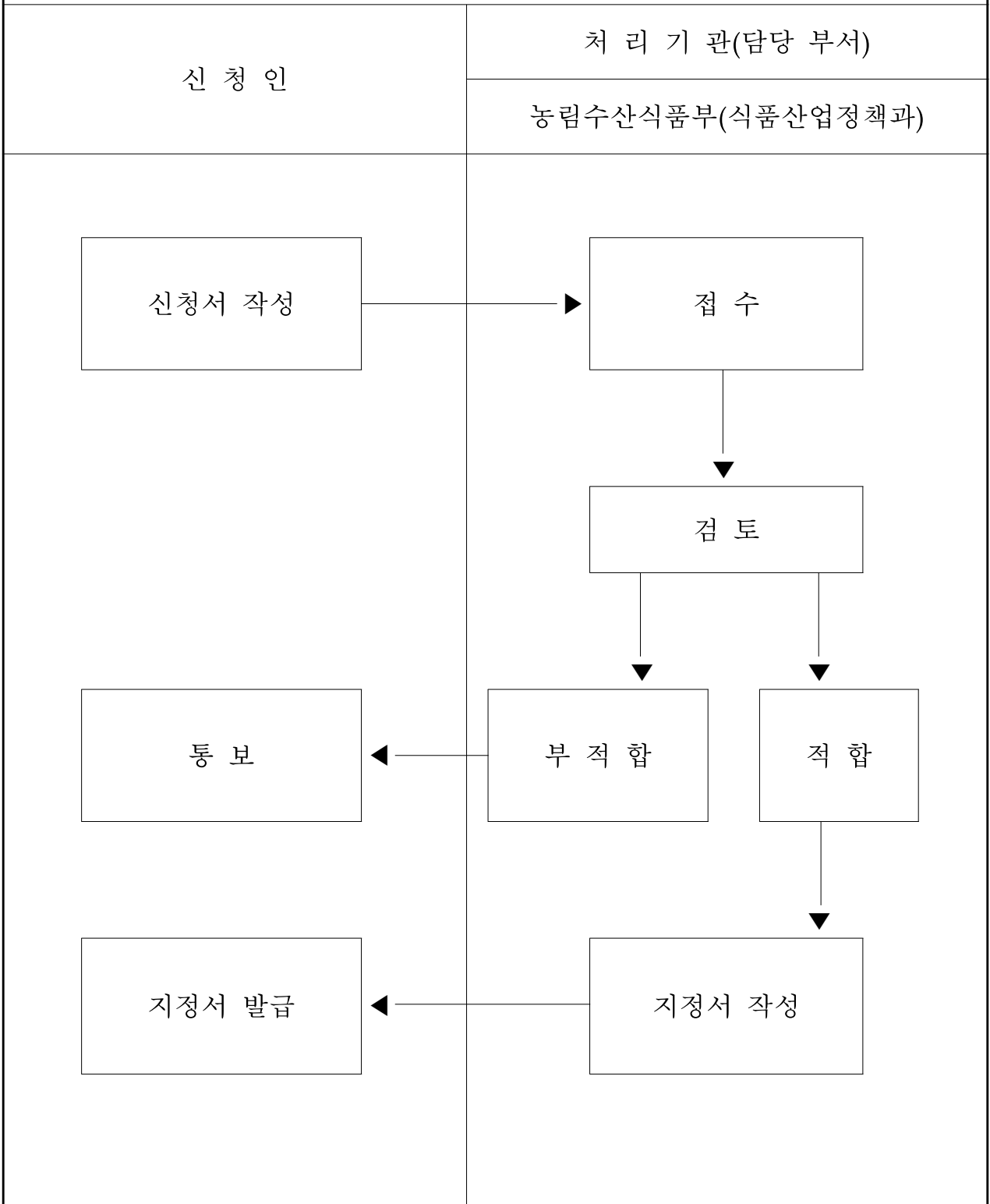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